2026년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6. 6. 1. 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설지혜(분과위원장), 김정숙, 백경태, 이동국, 홍승기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6-13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제3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54건(안건번호 제2026-84477호~8773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84477호~84479호(순번 1번~3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84480호(순번 4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안이나, 링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 제공 사이트의 화면을 캡쳐하며 해당 사이트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다른 게시글을 살피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게시물을 살펴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6-84481호(순번 5번)은 블로그에 특별편 영상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편 내용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시리즈에 대한 국내 마니아층 규모나 현재까지 국내 수입 및 방영된 시리즈물의 종류 및 원저작물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추후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점, 현재 및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불법복제물에 의한 급격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국내 시정권고제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6-제2026-85931호, 85958호, 85959호, 85963호, 85964호, 85965호, 85993호, 85995호, 85996호, 85997호(순번 1455번, 1482번, 1483번, 1487번, 1488번, 1489번, 1517번, 1519번, 1520번, 1521번)은 원본 중 일부 장면만을 게재하면서 줄거리를 소개하고 본인의 감상을 기재한 리뷰 게시글에 해당하는 점, 원작을 대체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시장에 유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 사용 분량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6-84482호~제2026-87730호(순번 6번~3254번)은 은 모두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26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여부(안건번호 제2026-119호~144호)

- 회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26개 사이트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를 가결함.

o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권고 11건(안건번호 제2026-76호~제2026-8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76호~제2026-86호(순번 1번~11번)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설지혜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6-13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제1호 안건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설지혜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등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

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확인하였으며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설지혜 분과위원장: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 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627개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총 3,254건의 안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 게시 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번~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안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의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할 수 있음.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국내 온라인서비스에 소재하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순번 4번 게시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4번의 경우, 이미지 형태로 특정 사이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주소는 저작권 침해물 등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미지의 내용이 불법사이트 운영자 간의 갈등 또는 상호 비난을 풍자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게시 장소 역시 유머 게시판이라는 점은 인정됨.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법사이트의 명칭 및 접속 가능 주소를 노출하고 있으며,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만으로도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특히 불법사이트의 주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게시자의 주관적 의도나 풍자적 맥락과 별개로 실제 이용자 유입 및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또한, 저작권 침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소·링크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침해물 게시에 이르지 않더라도 침해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 역시 그러한 측면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외관상 유머·풍자적 성격이 일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다량의 불법 광고를 수반하는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효과를 수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며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1번~3번은 글 자체에 의도적으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형식이지만, 순번 4번은 비판을 위하여 사이트 화면 중 일부를 가져온 사안임.

- B 위원: 순번 4번 게시자의 다른 글을 살펴보면, 해당 게시글 외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게시물을 살펴볼 수 없음. 게시자는 최근 이슈 사안들을 모아서 올리는 것으로 보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1번~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순번 1번~3번은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순번 4번은 ■■■로 이어지도록 만든 사이트나, 게시자 역시 선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게시자의 사회 문제에 대한 평론 글을 참고한 결과 ■■■로 연결하기

위한 반어법적 광고가 아니라 ■■■를 견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의도로 이해되므로 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1번~3번은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순번 4번의 경우 ■■■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논조로 게시글이 작성되었던 점,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다른 글을 살피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게시물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부결 의견임.

- D 위원: 순번 1번~3번은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순번 4번의 경우 링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 제공 사이트의 화면을 캡쳐하여 게시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링크 제공사이트로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1번~3번은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순번 4번은 비판 대상인 사이트의 화면 중 일부를 가져와서 인용만 한 것으로 정당 이용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결 의견임.

- E 위원: 순번 1번~3번은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순번 4번은 부결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순번 4번은 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5번~1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웹하드 등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임.

(순번 5번 게시 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5번은 일본 드라마 '●●●●●●'를 토대로 제작된 '▲▲▲▲▲▲▲▲'로, 일본 아동용 TV 프로그램 잡지의 응모자 대상으로 한정 배포된 영상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편 내용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시리즈에 대한 국내 마니아층 규모나 현재까지 국내 수입 및 방영된 시리즈물의 종류 및 원저작물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추후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점, 현재 및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불법복제물에 의한 급격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국내 시정권고제도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그 외 순번 6번~13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을 경우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조 제1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5번~13번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D 위원, E 위원: 원안대로 순번 5번은 부결, 순번 6번~13번은 가결 의견임.

- B 위원: 순번 5번은 블로그에 특별편 영상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편 내용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시리즈에 대한 국내 마니아층 규모나 현재까지 국내 수입 및 방영된 시리즈물의 종류 및 원저작물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추후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내에서도 관련 시리즈물의 정식 수입 및 방영된 점, 해당 게시물 영상이 공식적으로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여전히 적법한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고 및 삭제, 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순번 6번~13번은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5번은 블로그에 특별편 영상을 게시한 사안으로 데드카피에 해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순번 6번~13번은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순번 5번은 부결 3인, 가결 2인으로 부결함. 순번 6번~13번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4번~325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영상, 출판 등을 블로그,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드라마 ‘디렉터스 아레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75번

디렉터스 아레나’ 는 2026년 5월부터 방영 중인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 Wavve 등에서 서비스 중임. 웹하드에서 1개 화를 3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순번 1455번 게시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455번 등 10개 안건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만화 리뷰 게시물임. 해당 게시물은 이전에 민원인 신고로 동일 블로그의 동일 저작물에 대한 안건이 가결된 이후, 민원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청에 따라 유사 게시물들을 모아 일반 안건으로 상정한 사안임. 다만 본 건은 단순 복제 게시물과 달리 게시자의 감상이나 주관적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다수의 이미지가 복제·게시되어 있으며,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져 있음. 일부 표현에서 작성자의 감상이나 주관적 의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내용 소개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순번 14번~3254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순번 1455번과 유사한 사안 심의 사례에 대한 결과를 질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만화 5컷을 사용하여 작성한 리뷰게시물에 대하여 부결하신 바 있음.

- A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은 5컷보다는 많은 분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데드카피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 D 위원: 원저작물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가결, 소비자 유입 효과가 높다고 본다면 부결로 볼 수 있음.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14번~325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455번 등 10개 안건은 부결 의견, 그 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455번, 1482번, 1483번, 1487번, 1488번, 1489번, 1517번, 1519번, 1520번, 1521번은 부결하고, 그 외 순번 14번~3254번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84480호, 제2026-84481호, 제2026-85931호, 제2026-85958호, 제2026-85959호, 제2026-85963호, 제2026-85964호, 제2026-85965호, 제2026-85993호, 제2026-85995호, 제2026-85996호 ,제2026-85997호(순번 4번, 5번, 1455번, 1482번, 1483번, 1487번, 1488번, 1489번, 1517번, 1519번, 1520번, 1521번)은 부결함.
그 외 제2026-84477호~제2026-87730호(순번 1번~3254번)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설지혜 분과위원장: 2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후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통지하였기에 심의를 진행하는 안건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 명령 조치를 시행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래 26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후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였음.
(긴급차단 조치 사이트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안건인 26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전송되는 복제물, 정보 또는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심의 대상 사이트 내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래 1.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심의 대상 사이트에 대한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확인됨.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다수의 불법복제물등을 자체 서버 또는 별도의 저장서버에 저장한 후 게시판, 뷰어, 재생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를 조회,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대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 대상 사이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차단 등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URL 주소 중 일부 숫자 등을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래 26개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13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하였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이후 URL의 숫자 부분 등을 변경하여 재운영되고 있음. (접속차단 시정명령(긴급차단) 또는 시정권고 사이트 목록을 제시하면서) 해당 목록은 문체부가 긴급차단 명령을 하였거나 보호원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사이트이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가결된 사이트임.

채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나.항과 같은 비교에 의하면 심의대상 사이트는 문체부에서 긴급차단을 명령하였거나 보호원에서 접속차단을 시정권고한 사이트 26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사이트로 인정할 수 있는데(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에서 다시 한번 따져봄), 여기에 아래 2)와 같이 주요 권리자들에 대하여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이트 전체가 기존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이트 전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콘텐츠 등 불법복제물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다음은 복제·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

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음.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 해당 표와 같이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한 침해 사이트상 콘텐츠들의 주요 권리자들에게 공문 등으로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음.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해당 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위와 같이 문체부에서 긴급차단을 최초 명령(2026. 5. 11.)한 34개 사이트 또는 그 후 대체사이트로 인정되어 긴급차단을 명령한 사이트 및 보호원에서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한 사이트 중 URL 숫자부분 등을 변경한 대체 사이트들임. 따라서 그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 지속적으로 URL 숫자부분이 업데이트 되고 있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차단할 필요도 있음.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저작물들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스트리밍 또는 링크나 다운로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를 하려고 하여도 통지를 수령할 주소를 사이트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저작권자로서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저작권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접속차단 사이트와 심의대상 사이트의 동일성 확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의대상 사이트들을 통하여 접속되는 사이트는 문체부의 긴

급차단 명령 대상 사이트와 보호원의 접속차단 시정권고 사이트 또는 방미심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로 차단된 사이트와 도메인명, 사이트 제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일부 심의대상 사이트의 일부 게시물 정보의 경우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일부 접속차단 사이트의 경우 별도 안내 페이지·팝업창 등을 통해 현재 또는 향후 대체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접속 차단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대체사이트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접속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종합하면 심의대상 사이트 26개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긴급차단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설지혜 분과위원장: 추가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다면 순번 1번 내지 26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26개 사이트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를 가결함.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6-119호~144호(순번 1번~26번)의 접속차단 명령을 가결함.”

o 제3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설지혜 분과위원장: 제3호 안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11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의 시정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함.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11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전송되는 복제물, 정보 또는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제·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이외 다른 대체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는 2호 안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음.

  (순번 1번 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로 오로지 링크 5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현재 순번 1번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됨.

(순번 2번 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2번은 사이트 명칭이 불법 웹툰 사이트 중 하나인 △△△△과 동일하며, 실제로 △△△△, △△△△△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그밖에 ▶▶이나 ◆◆◆◆◆와 같은 사이트로 접속되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사이트 내에 '△△△△

임. 지난해 CDN 사업자가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친 불법 정보에 대하여 제한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근거하여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 반면 우리 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은 ISP 통신사업자에게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음.

- A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추후 대체 사이트에 대한 차단 근거가 될 것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1번~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3번 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번~8번은 운영자가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 또는 별도 저장서버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들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3번~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8번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9번 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9번~10번은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복제물등을 게시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웹툰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검색창을 이용하여 손쉽게 웹툰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사이트 메인화면과 팝업창, 각 게시물 내에는 배너광고가 게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웹툰 복제물 등을 제공하는 게시물은 웹툰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9번~1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10번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1번 화면을 제시하면서) 한편, 순번 1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복제물등을 게시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영문 사이트임.

심의 대상 사이트는 영미권 이용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영어로 운영되는 바, 행정조치의 국외 사이트 적용과 관련하여 효과이론 및 국내지향이론 등을 보충적 논거로 참고할 수 있음.

심의 대상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월평균 접속자 수는 33만명 이상으로 집계되는바, 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집계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트래픽 상위 50위 이내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는 동 사이트가 영미권 대상으로 운영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에 대한 불법 웹툰 등 불법복제물의 유통 창구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효과이론상 국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효과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음. 즉, 심의 대상 사이트가 영미권을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행정조치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나아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조치는 사이트의 서버 소재 지역이나 주된 서비스 대상 등을 한정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의 불법복제물등 전송 사실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 대상 사이트는 국내법상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심의 대상 사이트에 대하여 국내 이용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불법 웹툰 사이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접속차단 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종합하면, 심의 대상 사이트는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한 불법복제물 등을 게시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들은 웹툰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임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은 순번 1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설지혜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76호~제2026-86호(순번 1번~11번)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설지혜 분과위원장이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6. 8.

분과위원장　　설지혜

위원　　김정숙

위원　　백경태

위원　　이동국

위원　　홍승기